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단50834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의 2018. 3. 15. 85,506,849원에 관하여 체결한 금전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5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E의 D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E로부터 양수하였고, 2023. 3. 14. 현재 위 채권액은 85,506,849원이다. D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8. 6. 5. 군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15. 매매(거래가액 43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과거 부동산 소유 이력이 없고 가정주부였던 피고가 피고의 자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이 2018.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 4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2018. 3. 15. 이 사건 채권액인 85,506,849원에 관하여 체결한 금전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5,5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8. 18. 피고 명의 계좌에 D 명의로 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I조합, J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D이 2018. 3. 15. 피고에게 85,506,849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2018. 3. 15. 피고에게 85,506,849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주